

물품계약 일반조건

입찰건명 : 전라북도 남원·군산의료원 마약의약품 공동구매

전라북도 남원·군산의료원장(계약담당)과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
마약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

제1조(적용)

본 특수조건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마약의약품 공동구매계약에 적용하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2조(계약의 원칙)

전라북도 ○○의료원(이하“계약자”라 한다)과 ○○○○(이하“계약상대자”)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계약가 변동 또는 표준코드 변동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일 이후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변동시 계약단가에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변동율을 적용하여 자동 조정하며(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같음), 적용결과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, 1원 미만은 1원으로 한다.
- ② 동일약품의 표준코드가 바뀔 경우 자동 승계한다(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같음).
- ③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착오 등으로 계약단가가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 계약단가로 자동 조정(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같음)하고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초과금액을 환수한다.

제4조(납품 및 수량조절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납품지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(공휴일 포함) “계약자”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목록, 수량, 취급상 주의사항, 유효기간(검수일로부터 1년이상)등을 명시한 약품을 직접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,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없다.
- ② 의약품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망실, 파손 등의 비용과 이에 따른 제경비 일체는 “계약상대자” 부담으로 한다.
- ③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,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“계약자”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- ④ 1항의 거래명세서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건에 대한 의약품의 전량에 대한 검수완료 일자로 한다.
- ⑤ 유효기간 경과, 파손 등 타당한 사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교환에 응하여야 하며,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약품 및 소모가 없거나 월별 사용량이 희박하여 유효기간 내에 소모가 어려운 약품 등에 대하여 “계약자”가 반품요청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적극수용하여야 한다.
- ⑥ 입찰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를 이유로 “계약자”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- ⑦ “계약자”는 필요한 경우 입찰품목의 수량을 초과 납품 요구할 수 있다. 또한 “계약상대자”의 동의를 있을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,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수 있다.

제5조(지연배상금)

“계약상대자”는 제 4조 1항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지연배상금(0.8/1000)을 지연 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
- ②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
- ③ 납품지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되거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환자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(1회: 주의, 2회: 경고, 3회: 계약해지)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“계약자”에게 귀속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7조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“계약상대자”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제7조(권리의무 양도금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상 권리의무(납품 등)를 “계약자”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.

제8조(지역개발채권매입)

“계약상대자”는 물품거래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.5%에 상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대가의 지급)

“계약상대자”의 계약이행(납품)에 따른 대금 지급방법은 현행 방법과 결제기간을 유지한다. 단, “계약자”의 자금 수급사정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~2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관할법원 등)

본 입찰 및 계약 납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“계약자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11조(기타)

- ① 계약기간 중 품질품목이나 생산중단품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“계약자”의 승인에 의해 품질 또는 생산중단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, 동일성분의 타 제조업체 품목으로 상호 협의 하에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. 단, 타 제조사로 변경 납품 시 계약단가는 기존 계약품목의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대비 계약단가율을 적용하며, 변경납품 품목은 “계약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상호협의하여 대체품을 선정한다.
- ② 건강보험 급여상한액 품목에서 제외되어 비급여화된 품목은 최종 거래 납품단가로 납품한다.
- ③ 공고서 및 본 특수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(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)등 관계법령을 속지

하고 이행하며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“계약자”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④ “계약자”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